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19
----------	-------

발의연월일 : 2026. 6. 8.

발 의 자 : 김현정 · 이훈기 · 장종태
안태준 · 안도걸 · 박홍배
정진욱 · 김문수 · 황명선
박상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계 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상당 부분 투자되어 있으며, 상장기업들의 수시배당을 통해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배당이 연 1회 또는 2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이익배당의 특례로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계 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충분히 투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이 배당의 분기지급 또는 월지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당을 통한 주주들의 안정적인 소득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가계 자산이 금융투자상품 중심으로 배분되도록 유도하여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자 함. 나아가 주주가치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5조의12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12제1항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금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배당(이하 “수시배당”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분기배당금”을 “수시배당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분기배당액”을 각각 “수시배당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한다.

1.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이 각각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하는 이익배당
2. 정기총회일이 속한 달을 제외하고 매월 말일부터 1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하는 이익배당

제165조의18제17호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8호 중 “분기배당금”을 “수시배당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 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u>그 사</u> <u>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u> <u>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u> <u>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u> <u>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u> <u>다)을 할 수 있다.</u> <u><신 설></u></p> <p><u><신 설></u></p> <p>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u>분기배당금</u>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 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 관 또는 이사회에서 그 지급시 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p>	<p>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 ----- -----<u>금전으로</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u> <u>당하는 이익배당(이하 “수시배</u> <u>당”이라 한다)-----.</u></p> <p>1. <u>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u> <u>월 및 9월이 각각 경과한 날</u> <u>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u> <u>의로써 하는 이익배당</u></p> <p>2. <u>정기총회일이 속한 달을 제</u> <u>외하고 매월 말일부터 15일</u> <u>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하는</u> <u>이익배당</u></p> <p>② (현행과 같음) ③ -----<u>수시배당금</u>----- ----- ----- -----</p>

따른다.

④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 3. (생략)

4. 분기배당에 따라 해당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⑤ 해당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분기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해당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분기배당을 한다는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이사가 상

-----.

④ 수시배당-----

-----.

1. ~ 3. (현행과 같음)

4. 수시배당-----

⑤ -----

---수시배당-----

-----.

⑥ -----

---수시배당-----

수시배당액-----

-----수시배당

액-----

-----.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 16. (생략)

17. 제165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배당을 한 경우

18. 제165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165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을 한 경우

20. ~ 25. (생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

-----수시배당-----

18. -----
-----수시배당금-----

19. -----
-----수시배당-----

20. ~ 25. (현행과 같음)